

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문화 조성

2025년 제1회(분기 통합) 노사협의회 회의 자료

- 일시 : 2025. 00. 00.(○요일) 00:00
- 장소 : 본관 0층 000 회의실



경상북도교육청
공무원노동조합



경상북도교육청
Gyeongsangbuk-do Office of Education

연번	안 건	검토부서
1	<p>[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 및 독서지원비 추가 신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(다양한 도서 구입 및 체험학습, 직무 능력 향상 및 교육활동 지원 경비,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 교육비·교재비 등) ○ 자율연수비 내 ‘독서지원비(10만원)’ 세부항목 신설 	1p 총무과
2	<p>[업무용 메신저 사용 및 조합 게시판 신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무용 메신저 사용 및 K-에듀파인 내 노동조합 게시판 신설 ○ 조합원의 소통 강화 및 권리 구제, 신속한 정보전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	2p 미래교육 정보과
3	<p>[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 업무 수당 지급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, 구성, 회의록 등 실질적 업무를 간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마련토록 함 ○ 『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』에 간사업무활동 경비 지급근거 신설 	3p 행정과 기획예산관
4	<p>[조리직렬 공무원의 교육(지원)청 급식담당 부서 배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 전문가 배치로 효율적인 급식 현장 민원 해결 ○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적극행정 반영 	4p 행정과 총무과 체육건강과
5	<p>[방학 중 행정실 재택 근무 실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방학 중 행정실의 재택 근무 실시로 일·가정 양립 지원 ○ 학교 업무공백 방지 범위 내 희망자 중심·자율 시행(사례: 경기도·인천) 	5p 총무과
6	<p>[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수정 배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7급 이하 및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을 통한 표준안 개정 추진 ○ 학교 규모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간 업무량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조정 ○ 시설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관리 행정사무업무가 가능한 시설관리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표준안 제시 	6p 행정과
7	<p>[단체협약 이행 요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기별 이행 결과 통보(협약 제29조) ○ 근로조건 등 관련 규정 제·개정 시 사전협의 이행(협약 제3조) ○ 노사교육 현행 지속 시행(협약 제5조 제4항) 	7p 학교지원과 체육건강과 행정과

안건 1

자율연수비 사용처 확대 및 독서지원비 추가 신설

> 목적

-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자율적 학습기회 확대 제공
- 자기 계발을 위한 개인 학습 경비 지원

> 현황 및 문제점

- 자율연수비 지원 범위를 직무·전산·어학, 대학, 공인자격증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
- 대부분의 연수기관 전문 교육 과정에서도 인문·소양,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됨
- 유독 자율연수비 지원 항목만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 및 형평성에 어긋남
-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함양, 다양한 체험 학습을 통한 소통능력 향상, 인문 소양 겸비는 제한된 연수기관의 훈련으로는 충당할 수 없음
- AI시대에 반드시 창의적·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과 전문성이 필요함

> 근거

- 2025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지원 계획
- 2025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계획
-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6급 장기교육훈련과정 운영 계획

> 협의사항

- 다양한 도서 구입 및 체험학습, 직무 능력 향상 및 교육활동 지원 경비,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 교육비(교재비 포함) 등 자율연수비 지원 분야 확대
- 자율연수비 세부항목 신설: 독서지원비
☞ 창의적·비판적 사고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독서지원비(10만원) 추가

> 주관부서: 총무과

안건 2

업무용 메신저 사용 및 조합 게시판 신설

▶ 목적

- 조합원의 소통강화 및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로 조합원의 사기 진작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2023년 노사협의 사항인 업무용메신저 사용금지 해제로 조합원 간 원활한 소통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고자 함
- 업무시스템 내 조합 게시판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각종 정보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

▶ 근거

- 2013년도 단체 협약서 제5조 [노동조합 활동 보장]

▶ 협의사항

- 업무용 메신저 사용
- k-에듀파인 시스템 내 조합 게시판 신설(k-에듀파인 / 업무지원 / 노동조합)

▶ 주관부서: 미래교육정보과

안건 3

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업무 수당 지급

▶ 목적

-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, 진행, 수당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간사 업무 수행의 의욕을 증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『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16조(간사)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를 행정실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
-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은 대부분 교육과정과 관련한 업무임
-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의 역할은 위원 선출 및 구성, 안건정리, 일정 조율, 회의 개최, 진행, 회의록 작성 및 민원처리, 정보 공개 등 실질적 업무를 수행함
- 간사의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없어 피로감 누적, 사기 저하, 회피 업무가 됨
- 회의 절차, 기록물 관리 등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됨

▶ 근거

-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
- 2025 공립학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

▶ 협의사항

- 『학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』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업무 활동 경비 지급 근거 신설
- 전남교육청 시행 중(회당 7만원 지급)

▶ 주관부서: 행정과, 기획예산관

안건 4

조리직렬 공무원의 교육(지원)청 급식담당 부서 배치

▶ 목적

- 일몰화로 인해 저하된 조리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
- 현장 전문가 배치로 효율적인 급식 현장 민원 해결
- 조리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근무 여건 향상, 나아가 조리인력난 해소에 기여
- 발전하는 학교급식에 발맞춰 조리 업무의 효율, 질 향상을 위한 대량 조리법 개발과 지도 · 모니터링으로 조리전문가 양성 활성화
- 소통과 공감을 통한 조리 관련 현장 업무 반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급식 방향 수립 가능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학교급식 현장에는 영양교사 · 조리사 · 조리원이 배치 되어 있으나, 교육청과 일부 교육지원청에는 영양교사만 배치되어 있어 급식 인력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
- 교육지원청에서 급식 관련 각종 민원 발생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실질적인 학교 현장 유경험자가 없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움
-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구현이 어려움

▶ 근거

-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3조(보직관리의 일반원칙)
- 2025 학교급식기본방향 p.89 VII.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
- 경남교육청 → 2015년 ‘전국 최초’로 조리직렬 공무원 본청 배치 후 현재 2개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음

▶ 협의 사항

- 본청 체육건강과 급식담당 부서에 공무원 조리사 배치
(정원 조정, 인사배치, 업무분장)

▶ 주관 부서 : 행정과, 총무과, 체육건강과

안건 5

방학 중 행정실 재택 근무 도입

▶ 목적

- 방학 중 행정실 공무원의 재택 근무 도입으로 일 · 가정 양립 지원
- 직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증대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학교 방학중 업무량 감소에도 전 직원 출근으로 인한 인력 낭비
- 방학 중 민원 및 대면 업무 감소로 유휴 시간 증가
- 육아부담해소, 출퇴근시간 절감, 역량 개발 기회 확대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
- 서울교육청 · 경기도교육청 · 인천교육청에서 실시 중

▶ 근거

-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3조
-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(제5169호) 제13조

▶ 협의사항

- 학교 방학중 행정실 공무원의 재택근무 시행
 - 시행시기: 25학년도 겨울방학부터
 - 시행방법
 - 학교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 자율
 -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우선
 - (참고) 타시도(경기 · 인천 등) 운영 중

▶ 주관부서: 총무과

안건 6

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수정 배포

> 목적

- 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 정비를 통한 행정 업무의 체계화
- 학교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을 정비함으로써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

> 현황 및 문제점

- 기존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은 2017년 생산된 것으로 업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- 기존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은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함.
- 기존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은 시설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
> 근거

-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(약칭: 행정업무규정)
제60조(업무의 분장)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,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학교 및 교육지원청 행정 업무분장 표준안 안내[행정과-3903 (2017.6.27.)]
- 행정 업무분장 표준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항[행정과-4633 (2017.7.19.)]
- 학교 및 교육지원청 행정 업무분장 검토 결과 안내[행정과-5226 (2017.8.16.)]

> 협의사항

- 행정실 업무분장 표준안에 대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
- 학교 규모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
- 시설관리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관리 행정사무업무가 가능한 시설관리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표준안 제시
- 표준안 개정 추진 시 노조 추천 실무참여자 포함

> 주관부서: 행정과

> 목적

- 2013 단체협약 주요 조항들이 최근 이행되지 않아,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.

> 현황 및 문제점

○ 이행 결과 미통보

- 단체협약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, 최근 1년 6개월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음.

○ 사전 협의 절차 미이행

-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·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·규칙·훈령(행정지침 포함)의 제·개정 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.
 - 2023년 조리직 공무원 미채용(일몰제) 결정 시 노조 사전협의 미실시.
 - 2025년 ‘직영 통학차량 임차 전환 추진 계획’에 따른 운전직 근로조건 변경에도 사전협의 미이행.

○ 노사교육 운영 관련 이견 발생

- 단체협약 제5조 제4항 및 2014년 2/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지난 10년간 노사교육을 조합 주관으로 운영해왔음.
- 최근 일부 부서에서 “부당노동행위 우려”를 이유로 2026년부터 노사교육을 조합으로 이관하자는 요구 제기.
- 그러나 대법원 판례¹⁾(1991.5.28. 선고 90누6392)에 따르면,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의 급여지급·교육운영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, 그간의 노사교육 운영은 단체협약과 합의에 근거한 정당한 활동임.
- 언론 보도(코리아투데이뉴스, 2025.8.13.)를 근거로 전체 노사교육을 재검토하는 것은 일부 사례의 일반화로 판단됨.

1)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,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,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(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6392 판결)

> 근거

○ 「2013년도 단체협약」

- 제2조: 협약의 성실한 이행
- 제3조: 근로조건 관련 제·개정 시 사전협의
- 제5조 제4항: 노사교육의 공동 시행
- 제29조: 반기별 협약 이행결과 통보
- 대법원 1991.5.28. 선고 90누6392 판결
→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한, 조합활동 관련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음.

> 협의사항

○ 「단체협약」 제2조에 따라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함.

○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함:

- ① 반기별 협약 이행결과 통보(제29조)
- ② 근로조건 및 지위 관련 규정 제·개정 시 사전협의 이행(제3조)
- ③ 노사교육을 현행대로 지속 시행(제5조 제4항)

> 주관부서: 학교지원과, 체육건강과, 행정과